

# 경력기술자 인정지침

## □ 목적

- 본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설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건설기술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이하 “경력기술자”라 한다)에게 그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□ 적용범위

- 본지침은 토목·건축 등 건설관련분야의 학력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, 시공, 감리 등의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.

## □ 인정기준

- 기술등급별 기술수준과 최소경력(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조)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기술등급	기술수준	최소경력
중급기술자	기사 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사 : 9년 이상</li> <li>전문대졸 : 12년 이상</li> <li>고졸 : 15년 이상</li> </ul>
초급기술자	기사 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대졸이상 : 5년 이상</li> <li>고졸 이상 : 7년 이상</li> <li>고졸 미만 : 10년 이상</li> </ul>

-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기술분야업무를 담당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다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만18세 미만의 경력

- 재학기간중의 경력(야간학교 재학중의 경력은 포함)
- 공병·시설병과에서 장교·장기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의 군복무 경력
- 단순 노무 및 행정·사무·경리·구매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

## □ 인정계획 공고

- 한국건설기술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는 경력기술자 인정계획을 일간건설 및 전국보급망을 갖추고 있는 일간신문과 건설전문지 각 2개지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협회가 공고할 인정계획에는 인정신청기간, 인정절차, 제출서류, 등급기준 등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인정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.

## □ 경력기술자 인정 신청

-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협회에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소정 기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현재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도 과거에 건설기술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협회에 경력기술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이력서·경력확인서·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기간은 인정기준상의 최소경력기간 이상이어야 한다.
- 재직했던 업체가 폐업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

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재직당시 업체의 등기임원 또는 '98. 2월말 현재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동료 기술자 중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2인의 사실확인서 및 법인해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-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협회는 경력심사 및 면접고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각 단계별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다.
- 신청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및 결과발표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야 한다.
-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(이하 "회장"이라 한다)은 신청서류 보관책임자 및 보관함을 지정하여 별도보관하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보관중인 신청서류는 경력심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·수정·교환 또는 반환할 수 없다.

## □ 경력심사

- 협회는 신청자의 경력이 사실인가의 여부와 동경력이 인정기준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경력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"인정대상자"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협회는 경력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「경력심사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- 위원회는 위원장과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청자의 경력이 인정기준에 합당한가를 판정하고, 신청자의 경력증 사실여부를 확인할 대상경력을 지정한다.
- 위원장은 협회의 상근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분야별로 각각 1인씩 회장이 위촉한다.

-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토목·건축·기계 분야의 위원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.
- 제출한 경력내용 중 일부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건설기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협회는 위원회의 사무지원 및 신청자의 경력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경력심사반」을 구성·운영한다.
- 경력심사반은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회장이 협회의 직원중에서 적정수를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 및 경력심사반의 운영을 총괄지휘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력심사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회장에게 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서와 함께 위원회의 회의록과 경력심사반의 반월별 경력확인 자료일체(확인일자·확인방법·접촉자의 인적사항·확인결과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경력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인정대상자에게 면접고사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 □ 면접고사 실시

- 협회는 인정대상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면접고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인정대상자의 경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협회는 인정대상자의 경력과 기술수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「경력기술자인정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6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, 위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협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분야별로 각각 5인씩 위촉한 자로 한다.

- 위원회는 건설기술분야별로 각각 「소위원회」를 구성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한다.
-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동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.
- 소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소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
- 소위원회는 면접실시 결과에 따라 인정대상자를 불인정, 초급기술자, 중급기술자 중 하나로 분류 판정하여야 한다.
-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접고사가 종료되는대로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정대상자별 평가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면접고사에서 질문할 문항과 평가기준을 건설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질문할 문항과 평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분야별로 출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회장은 면접고사 실시 이전에 질문할 문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출제위원의 위촉과 관리 및 출제시기·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협회는 면접고사가 완료되는 대로 경력기술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동인정 사실을 통보하고 교육훈련 및 경력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.

## □ 교육훈련

- 면접고사에서 경력기술자로 인정된 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에 의한 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

이수하여야 한다.

- 회장은 경력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받을 기관과 시기를 지정·통보하여야 한다.
- 경력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동기술자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명단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하여야 한다.

## □ 인정취소

- 회장은 건설기술자로 인정된 자가 인정 신청시 제출한 경력내용 중 일부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인정을 취소한다.
- 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경력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건설기술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□ 행정사항

- 회장은 경력기술자 인정계획(일정, 수수료 등)을 공공하기 전에 동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경력기술자 인정 신청 현황과 면접고사 시행계획·시행결과 등 주요 추진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교육기간, 교육기관, 교육시기 등 교육훈련계획을 경력기술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본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력기술자 인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결정코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본지침을 접수하는 대로 경력기술자 인정계획을 수립 동인정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.